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9. 7. 9.>

[]산림보호구역 []지정
[] 보호수 []지정해제 이의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0일
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고시된 보호구역/보호수 예정지		
면적/수종	보호구역 예정지 면적: ㎡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: , 그루	
[]지정 []해제 예정고시일	. . .(제 호)	
이의신청 면적/수종(수량)	㎡ 수종(그루)	

「산림보호법」 제8조제2항,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, 제10조의2제2항·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지방산림청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 이유서 1부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(뒤쪽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